4 신청방법

▷ 발급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한 신청과 방문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발급기관에 제출

※ 인터넷신청 : 무역인증서비스센터 홈페이지 접속후 서식입력

▷ 발급절차

① 서명등록 → ②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③ 증서수령

① 서명등록

– 까르네 명의인을 확인하는 사전절차로 신청인은 반드시 서명등록(유효기간 1년)을 필하여야 합니다.

– 서명등록시 제출서류

- 서명등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전 발급)

②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신청서류

- 까르네 발급신청서 및 서약서
- 총괄목록
- 이행지급보증보험증서

* 신청서식은 발급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증서수령

– 심사후 발급완료된 까르네 증서는 직접 방문수령, 우편수령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발급수수료

- 상공회의소 회 원 : 110,000원
- 상공회의소 비회원 : 187,000원
- 수입국 추가시 / 물품금액 별로 추가 수수료 부과

▷ 이행지급 보증보험

- 담보범위 : 물품금액(FOB)의 40%(중국, 인도는 100%)
- 보증기간 : 발급신청일로부터 1년간
- 보증보험취급기관 : 서울보증보험 및 자본재공제조합

5 발급기관

서울상공회의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빌딩 1층 Tel 02-6050-3303, Fax 02-6050-3319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광역시 부산지구 범천1동 853-1 Tel 051-990-7000, Fax 051-990-7039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Tel 053-222-3106, Fax053-222-3120
안양상공회의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05-2 Tel 031-447-9171, FAX 031-443-9260

까르네 사용시 유의사항

까르네 수입국 세관이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 방지를 위해 까르네 이용자는 사용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재수출 이행

수입국 세관이 지정한 재수출기간 이전에 반드시 전량 재수출되어야 하며, 재수출되지 않는 경우, 수입국 세관과 사후통관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재수출되지 않거나, 재수출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수입시 면제되었던 관세, 부가세 등 제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 사용후 반납

까르네 이용자는 사용이 완료된 까르네 증서를 발급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수입국 세관이 향후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 대응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미경과된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콜센터

Tel : 02-6050-3303, Fax : 02-6050-3319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http://cert.korcha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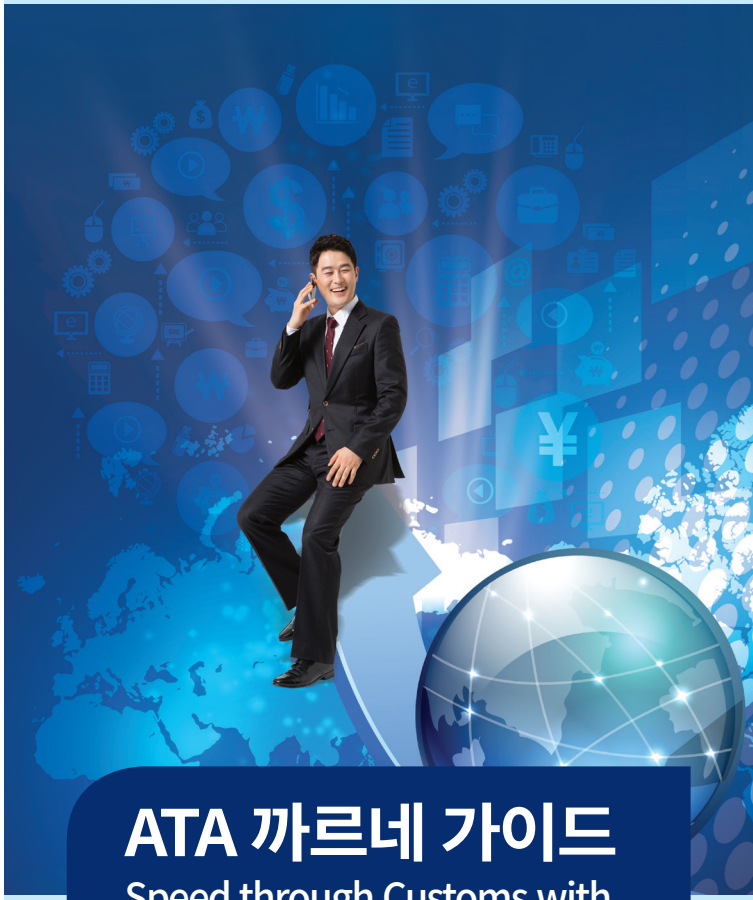

ATA 까르네 가이드

Speed through Customs with your passport for Goods

ATA까르네는 일시수출입되는 물품의 세관검사시 제출하는 통관증서입니다.

상품여권(Passport for Goods)으로 알려진 ATA까르네는 통관서류 작성이 면제됨은 물론, 관세/부가세/담보금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하지 않고 간편하게 통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세계 비즈니스맨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1 ATA 까르네를 사용 해야하는 이유

국제상업회의소(ICC)와 세계관세기구(WCO)는 일시수출입통관 방법으로 ATA까르네 사용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1 가장 간편한 통관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일시수출입 물품 통관방법 가운데 가장 신속하고 간편한 제도입니다.

2 거의 모든 종류의 아이템을 커버합니다.
현지에서 소비되거나, 성질과 용도상 재수출되지 않는 물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의 통관에 적용됩니다.

배제되는 물품
음식물, 신선식품, 농축산물, 종이컵, 카타로그 등 1회용품, 선물 또는 기부목적의 물품, 무기, 탄약 등 폭발성 물질, 위험물품

배제되는 용도
해외에서 가공(Process)을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판매가 목적인 물품
수송 포장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
자원개발 건설,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물품(단, 수공구는 허용)

3 획기적으로 통관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수입관련 각종 세금이 면제되며, 수입국 세관이 요청하는 예치금 등을 위해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한통의 서류로 통관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관시(수출시, 수입시, 재수출시, 재수입시) 마다 통관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 세관 검사관과 언어문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불확실성을 최소화 합니다.
통관 지연, 기타 세관문제로 인한 비즈니스 일정상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 유효기간 동안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까르네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동일한 물품에 대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미국 등 까르네 사용이 일반화된 선진국 세관은 전시회물품 등의 통관시 까르네 사용을 선호합니다.

2 활용 분야

까르네는 외국으로 일시 수출하는 대다수 거래유형에 적용될 수 있으며, 전시회 참가물품, 직업용구, 상업샘플 등 3가지 용도로 구분합니다.
단, 중국,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세관은 전시회 참가물품의 통관만 허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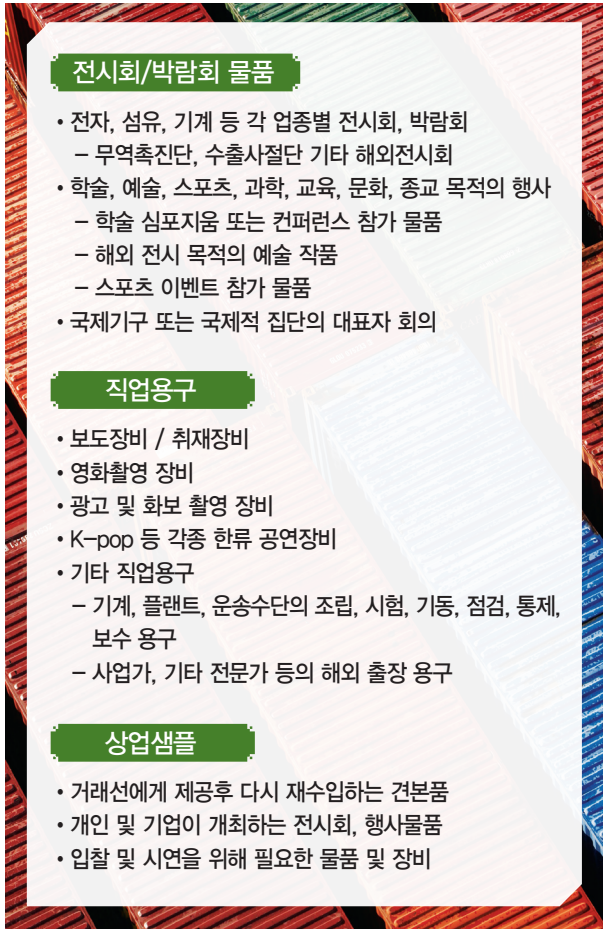

전시회/박람회 물품

- 전자, 섬유, 기계 등 각 업종별 전시회, 박람회
  - 무역촉진단, 수출사절단 기타 해외전시회
- 학술, 예술, 스포츠, 과학, 교육, 문화, 종교 목적의 행사
  - 학술 심포지움 또는 컨퍼런스 참가 물품
  - 해외 전시 목적의 예술 작품
  - 스포츠 이벤트 참가 물품
- 국제기구 또는 국제적 집단의 대표자 회의

직업용구

- 보도장비 / 취재장비
- 영화촬영 장비
- 광고 및 화보 촬영 장비
- K-pop 등 각종 한류 공연장비
- 기타 직업용구
  - 기계, 플랜트, 운송수단의 조립, 시험, 기동, 점검, 통제, 보수 용구
  - 사업가, 기타 전문가 등의 해외 출장 용구

상업샘플

- 거래선에게 제공후 다시 재수입하는 견본품
- 개인 및 기업이 개최하는 전시회, 행사물품
- 입찰 및 시연을 위해 필요한 물품 및 장비

3 까르네 활용이 가능한 국가

전세계 76개국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EU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까르네를 통한 일시수출입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사이프러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체크공화국, 라트비아, 스페인, 덴마크, 리투아니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영국, 핀란드, 말타, 프랑스, 네덜란드

기타유럽
알바니아, 아이슬랜드, 러시아, 안도라,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벨라루스, 몰도바, 스위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터키, 지프롤터,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중동
알제리, 레바논, 세네갈, 코트디브와르, 마다가스카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모리셔스, 튀니지, 이스라엘, 모로코,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미주
캐나다, 칠레,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시아/태평양
호주, 일본, 뉴질랜드, 중국, 한국, 파키스탄, 대만, 마카오, 싱가폴, 홍콩, 인도, 몽골, 태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 **까르네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주요 비협약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라크,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페루, 우루구아이,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